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2015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다른 사망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를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다른 부상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를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15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5조제1호 “「서울특별시광진구 표창조례」가 정하는 바에”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로 한다.

제8조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u>」에 따라 -----</p>	<p>제1조(목적) ----- 「<u>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p>
<p>제2조(정의)</p> <p>1. “<u>의사자</u>”란 「<u>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u>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u>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p> <p>2. “<u>의상자</u>”란 법 제2조제3호에 <u>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u>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2조(정의)</p> <p>1. --- 「<u>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 <u>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u>-----</p> <p>2. -----<u>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u>-----</p> <p>3. “<u>의사자유족</u>”이란 <u>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u> 말한다.</p> <p>4. “<u>의상자가족</u>”이란 <u>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u> 말한다.</p>
<p>제4조(지원사업 등)</p> <p>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u>구청장</u>”이라 한다)은 <u>법 제15조</u>에 따라 국가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제4조(지원사업 등)</p> <p>① ----- ----- <u>법 제16조</u>----- -----.</p>
<p>제5조(영예의 존중)</p> <p>1. 「<u>서울특별시광진구 표창조례</u>」가 <u>정하는 바에</u> 따른 포상</p>	<p>제5조(영예의 존중)</p> <p>1. 「<u>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u>」에 -----</p>
<p>제8조(시행규칙)</p> <p>이 조례의 <u>시행에 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p>	<p>제8조(시행규칙)</p> <p>-----<u>시행에 필요한</u>-----</p>